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33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윤후덕·김정호·홍기원

정준호 • 박민규 • 전진숙

정성호 · 이병진 · 부승찬

박수현 • 임미애 • 차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그런데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공기업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민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업을 수주해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인 공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를 통해 해

당 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70~80%에 달하는 자금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로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낮음.

이에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외국금융기관 등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 2. 해외 발주처의 입찰기한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시간적 제약
- 3. 재원 조달 방식 및 매출처 확보 여부
- 4. 국내 기업의 수출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제40조제5항 및 제6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제6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40 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③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예비타
	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내
	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외사업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기관 등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2. 해외 발주처의 입찰기한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시간적 제
	<u>야</u>
	3. 재원 조달 방식 및 매출처
	확보 여부
	4. 국내 기업의 수출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	<u>⑥</u>
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	
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의 규정</u> 에	<u>제5항까지</u>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

본다.

- ⑤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 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 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 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4</u> 할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 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 ⑧ 공기업·준정부기관은 <u>제4</u> <u>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u>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u>⑦</u>
<u></u> 刹 <u>5</u>
ত্তী
<u>⑧</u> <u>利</u> 5
<u>항부터 제7항까지</u>
,
제5항
<u>⑨</u> <u>제5</u>
항부터 제7항까지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 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기 저입·준정부기관은 <u>제40조제4항</u> 및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u>제40</u> <u>조제6항</u>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 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 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 을 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주무기관 의 장에게 <u>제40조제4항부터 제</u> 6항까지의 규정</u>에 따라 예산이

세42조(운영)	· 계획의 수립) ① 제40조제5항
	<u></u>
	·
	<u>제40</u>
③	·
	- <u>제40조제5항부터 제</u>
<u> 7항까지</u>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저	에출
하여야 한다.	